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1조, 제42조에 의하여 학생상벌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예원예술대학교 (이하“본교”라 한다.) 학칙의 정신에 입각하여 건전한 학풍을 수립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상벌 교화 선도함으로서 생활지도의 성과를 높이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지도) 상벌의 지도 실시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이를 행한다.

제3조(원칙) 포상은 공개로 징계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주관) 학생상벌에 관한 업무는 입학홍보처에서 주관한다.<개정 2021.7.22.>

제2장 포상

제5조(포상의 구분) 포상은 학업상, 모범상, 공로상, 창조상, 체육상으로 나눈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외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6조(학업상) 학업상은 본교 재학기간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선량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7조(모범상) 모범상은 각종 선행으로 교·내외서 타의 모범이 된 학생에게 수여한다.

제8조(공로상) 공로상은 사상이 건전하고 각 방면으로 본교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제9조(창조상) 창조상은 학술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어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에게 수여한다.

제10조(체육상) 체육상은 체육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어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에게 수여한다.

제3장 징계

제11조(징계의 구분)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고 그 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근신은 3일이상 7일이내
2. 유기정학은 7일이상 30일이내
3. 무기정학은 30일이상

제12조(징계의 발의) ① 전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학홍보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개정 2021.7.22.>

1. 사건경위서 1부
2. 본인의 진술서 1부
3. 필요시 지도교수 및 학과장 의견서 1부

② 학생종합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처분 요구학생에 대한 징계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종합복지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학생종합복지위원회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16조의 징계사항을 결정한다.

제13조(징계 중 학생지도)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징계 기간 중 담당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징계학생의 권리) 근신처분을 받은 학생은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생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분 받은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제15조(징계해제의 요청)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은 징계의 해제를 학생종합복지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징계사항) 징계사항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근신에 해당되는 사항
 - 1.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동으로 결례한 자
 - 2.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및 교내의 환경을 더럽힌 자
 - 3. 식당 및 휴게실의 풍기를 문란케 한 자
 - 4.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자
 - 5. 허가받지 않은 광고, 인쇄물을 교내의 지정장소에 붙인 자
 - 6. 교내 게시물을 무단 제거한 자
 - 7. 단체행사에서 무단이탈한 자
 - 8.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 ② 유기정학에 해당되는 사항
 - 1. 2회 이상 근신처벌을 받은 자
 - 2. 교내에서 부녀자를 희롱한 자
 - 3. 학우에게 협박 폭행한 자
 - 4. 교내에서 음주하고 소란을 피운 자
 - 5. 학생신분을 망각한 자
 - 6. 교내에서 도박을 행한 자
 - 7.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 ③ 무기정학에 해당되는 사항
 - 1. 2회 이상 유기정학을 받은 자
 - 2. 이유 없이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 3. 학우에게 집단폭행한 자
 - 4. 교내에서 허가를 얻지 않고 인쇄물을 붙이거나 배포한 자 또는 외부로 반출한자
 - 5. 시험 중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이를 계획한 자
 - 6. 교내에서 도둑질을 행한 자
 - 7. 상기 5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학기 성적전부를 무효로 한다
 - 8.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 ④ 제적처분에 해당되는 사항
 - 1. 2회 이상의 무기정학을 받은 자
 - 2. 교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선동한자
 - 3. 총장의 허가없이 집단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 4. 허가없이 단체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
 - 5. 교직원을 폭행한 자
 - 6. 폭행으로 타인에게 중대한 상처를 입힌 자
 - 7.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시험을 응시케 한 자
 - 8. 성행이 불량하거나 학력이 열등하여 수학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17조(포상과 징계절차) 포상과 징계에 대한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포상절차
 - 1. 입학홍보처장은 제 5조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개정 2021.7.22.>
 - 2. 입학홍보처장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품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7.22.>
- ② 징계절차

1. 입학홍보처장은 제11조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한다.<개정 2021.7.22.>

2. 입학홍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학생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학생 또는 지도교수의 출석을 요구하여 해명이나 참고 발언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1.7.22.>

제18조(징계의 해제)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으로부터 징계학생에 대한 징계해제 의견서가 제출되면, 입학홍보처장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은 다음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1.7.22.>

제19조(통보) 입학홍보처장은 포상과 징계의 사실을 지도교수, 학부(과)장, 학부형과 본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7.22.>

제2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한 바에 따른다.

제21조(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00. 3. 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7. 2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